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36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김용판·박덕흠·서범수

구자근・추경호・이태규

정희용 · 백종헌 · 유상범

이철규 · 강대식 · 김석기

김도읍 • 이만희 • 윤두현

홍석준 • 서일준 • 김형동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국민의 생명·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타 직업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나,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수준은 열악함.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소방, 교육, 행정 등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,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우울감, 수면장애, PTSD 비율이 높으며,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 실정임.

따라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유해 인자 발굴을 위한

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. 이에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 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, 제8조제1항, 제8조의2).

법률 제 호
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제4호 중 "건강검진"을 "심신건강연구, 건강검진"으로 한다. 제8조제1항 중 "건강검진"을 "심신건강연구, 건강검진"로 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특수건강진단)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·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 보험법」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건강진단기관"이라 한다)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.
 -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,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·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	제5조(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
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)	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3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	4
감안한 <u>건강검진</u> 및 정신건	심신건강연구, 건강검진
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	
사항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의료지원) ① 국가는 경찰	제8조(의료지원) ①
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	
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	
특성을 감안한 <u>건강검진</u> 및 정	심신건강연구, 건강검진
신건강검사와 진료(심리치료를	
포함한다) 등의 의료지원을 제	
공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특수건강진단) ① 경찰
	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
	<u>무원의 건강 보호·유지를 위하</u>
	여 제8조제2한에 따르 의료기

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 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건강진단기관" 이라 한다)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.

-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
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
 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
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
 직변경,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
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
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
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
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제1항의특수건강진단및제2항의정밀건강진단의시기·항목등필요한사항은경찰청장과해양경찰청장이각각정한다.